

보도시점 2026. 5. 18.(월) 12:00 / 배포 2026. 5. 18.(월) 08:30
 < 5. 19.(화) 조간 >

택배 안전사고 초래하는 부당 특약 및 고질적 서면 미발급 관행 제동

- 5개 택배업자 하도급계약 9,186건 전수조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억7,8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개 택배사업자*(원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이하 '영업점 등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및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이하 '쿠팡'), 씨제이대한통운(주)(이하 '씨제이'), 롯데글로벌로지스(주)(이하 '롯데'), (주)한진(이하 '한진'), 로젠(주)(이하 '로젠') (2024년 11월,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순)

< 택배 물류 관련 업무수행 개요 >



<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조치내용(요약) >

구분	쿠팡	씨제이	롯데	한진	로젠
서면발급의무 위반 건수	1,047건	144건	580건	270건	14건
부당특약 개수	5개 유형, 14개 조항	3개 유형, 11개 조항	4개 유형, 25개 조항	5개 유형, 11개 조항	5개 유형, 11개 조항
시정명령	재발방지명령, 90일 이내 특약조항 수정·삭제 명령*				
과징금(백만 원)	759	612	633	696	378

* 다만, 롯데는 심의일 현재 신규계약서 발급을 완료하여 수정·삭제 명령 미부과

이번 조사는 작년 8월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와 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사업자들의 작업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택배업계에 만연한 계약서면 미발급과 능장발급 관행을 시정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전면적으로 삭제, 수정하도록 하였다.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폭염 5대 기본수칙 등),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및 장시간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사항 등 점검(25.8.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참조)

특히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심의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신속하게 시정완료했거나 시정하기로 하고, 현재 공정위의 검토를 마친 새로운 계약서로 계약관계 갱신을 진행 중이다. 또한, 고질적으로 계약서면을 뒤늦게 발급하는 관행 시정을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시장현황 및 조사배경 >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쇼핑의 일상화에 힘입어 2023년 이후부터 1인당 연간 택배 이용건수가 100건을 초과*한 가운데, ‘새벽배송’, ‘당일배송’, ‘즉시배송’ 등 이른바 퀵커머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택배사업자 간 물류경쟁도 심화되어 왔다.

* 1인당 연간 이용건수: (21년)70.3건→(22년)81.9건→(23년)100.4건(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국내 퀵커머스 시장규모 전망 : (25년) 58.3억 달러→(29년) 75.4억 달러 / 연평균 성장률 6.6%

그 결과, 전국 단위의 대규모 물류망을 갖춘 상위 5개 택배사업자가 시장의 90.5% 이상을 점유한 상황이다.

< 국내 택배 시장 점유율 현황(2024년 9월말 누적 기준) >

구분	전체	5개 택배사업자					
		소계	쿠팡	씨제이	롯데	한진	로젠
시장점유율 (물량 기준)	100.0%	90.5%	37.6%	27.6%	10.3%	9.7%	5.3%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4. 11. 14. 로젠(주) 분기보고서」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택배 5개사는 ① 안전사고 관련 배상책임이나 물품의 훼손분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예: 안전사고 관련 행정처분 및 고소에 따른 벌금 대납 및 변호사 비용 전가)하거나 ② 기준이 모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거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특약(예: 택배사 이미지 실추 시 즉시 계약해지) 등을 설정함으로써 영업점 등을 압박하였고, 이러한 행태는 영업점의 택배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불공정한 사고처리,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8월부터 전국단위 물류망을 갖춘 상위 5개 택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행중인 계약서 등 총 9,186건을 전면 검토하는 한편, 조사 착수 3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안전을 상정('25. 12월)하고 올해 3·4월에 집중적으로 심의하여 부당한 계약조건을 시정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 법 위반 사실 및 조치 내용 >

1.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원사업자는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와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5개 택배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하는 특약, ②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 ③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 ④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때에 드는 비용 일체를 영업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 주요 부당특약 유형 >

구분	유형별 세부 내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전가	① 행정처분 및 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전가하는 조항
	② 택배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 벌금 등을 대납시키는 조항
	③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일체를 전가하는 조항
손해배상 책임 가중	④ 고객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⑤ 계약종료 후 인수인계 미이행 시, 과도한 손해배상 위약벌 부과 조항
	⑥ 차량 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일체를 부담시키는 조항
예측 불가 사항 책임 전가	⑦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불합리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수급사업자 이익 부당 침해	⑧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⑨ 터미널 운영 관련 원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⑩ 현금 담보기간 종료 후, 현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미반환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⑪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소명 기회의 제공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특약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사업자들 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이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 과징금 24억 7,8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5개 택배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관련 현황 및 조치내용 >

구분	쿠팡	씨제이	롯데	한진	로젠
부당특약 계약건수	1,155건	2,306건	3,609건	1,664건	452건
관련 수급사업자수	553개	2,175개	1,211개	773개	230개
법 위반기간	'22.1.~'26.3.	'22. 4.~'26.3.	'22.1.~'26.3.	'21.7.~'26.4.	'23.12.~'26.4.
조치 내용	시정명령	재발방지명령, 90일 이내 특약조항 수정·삭제명령* 등			
	과징금	5억6,700만원	5억400만원	4억8,300만원	5억4,600만원

* 롯데는 심의일 현재 신규계약서 발급을 완료하여 재발방지명령만 부과

2.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5개 택배사업자들은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용역 등을 영업점 등에게 위탁하면서, 총 2,055건의 계약에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계약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로젠(주)를 제외한 4개 택배사업자에게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5개 택배사업자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내역 >

사업자명	서면 발급 의무 위반내역				과징금 부과내역
	관련 수급사업자수	관련계약건수	서면발급 지연일수	평균지연일수	
쿠팡	550개	1,047건	1일~200일	34.4일	1억9,200만원
씨제이	141개	144건	1일~334일	22.1일	1억800만원
롯데	360개	580건	1일~761일	44.1일	1억5,000만원
한진	227개	270건	1일~311일	29.7일	1억5,000만원
로젠	13개	14건	1일~26일	11일	-

<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택배종사자들의 안전사고와 업무가중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택배사업자들로 하

여금 문제된 특약 전부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계약서면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택배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영업점 등에 대한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만들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5개 택배사업자들은 본 사건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부당 특약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영업점 등과 변경계약을 체결 중으로(다만, 롯데는 변경계약 체결 완료), 의결서송달일로부터 90일 안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택배사업자들이 화주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투자하고 사업규모 확장에 주력하여 단기간에 사업규모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하여 관련 시장의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책임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번 조치로 이러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5개 택배사업자별 부당특약 세부 내용

<참고1> 2025. 8. 6. ‘택배업종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보도참고자료

<참고2> 5개 택배사업자 일반현황, 관련 법령 및 고시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책임자	과 장	김동명 (044-200-5055)
	신산업하도급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변창재 (044-200-5066)
			사무관	이가영 (044-200-5056)



1.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특약 설정

<부당한 특약 예시>

- (쿠팡) 영업점 위·수탁계약 제26조(사고처리와 손해 배상) ③ 영업점 또는 영업점 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이 분실, 멸실, 도난, 파손, 훼손, 운송 지연되거나 (중략) CLS에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고소 및 고발이 제기된 경우, 영업점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과태료, 벌금, 과징금 기타 금전적 제재가 부과된 경우, 영업점은 CLS를 대신하여 납부해야 한다.
- (롯데) 상하차 도급계약 / 구간·서틀운송 도급계약 제5조(안전보건관리의무) ⑧ (생략)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도급인", 투입인력 또는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도급인"은 "수급인", 그 투입인력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만약 "도급인"이 보상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보상비용 및 변호사비용등 법률비용 전액에 대하여 "수급인"이 구상 책임을 부담한다.
- (한진) 택배터미널운영위탁계약 제10조("을"의 피고용인에 대한 책임) 5. (중략) 본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을"의 피고용인, 작업근로자 및 제3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산재사고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갑"은 면책한다.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에게 내려진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처분 등은 관련법상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원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인 택배사업자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법률상 의무 이행 주체인 택배사업자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소송 대응 비용 또는 행정처분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특약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 설정

<부당한 특약 예시>

- (쿠팡) 영업점 위·수탁계약 제21조(비밀유지) ② CLS와 영업점은 본 계약의 수행을 완료하거나 (중략)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영업점의 내부규정에 따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 (씨제이, 롯데, 한진, 로젠) 영업점 위·수탁계약 제4조(담보의 제공) ③ 영업점이 택배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택배사업자 0%, 영업점 100%로 부담한다.

<부당한 특약 예시>

- (롯데) 구간·서틀운송 도급계약 제18조(담보의 제공) ① "수급인"은 (중략) 담보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1. _____ 원의 현금 예치 (무이자 조건)
- (한진) 영업점 위·수탁계약 제19조(계약해지) 7.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갑'은 계약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대 2개월 간 업무수행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을'은 본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로젠) 터미널 도급계약 제22조(행정 협조) 3.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원가 자료를(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조항은 ① 계약 종료 후 모든 자료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점 등이 정산 내용의 확인 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②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 전액을 전가하고, ③ 현금 담보기간 중의 이자수익을 미반환하거나 계약해지 후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며, ④ 영업점 등의 경영정보·영업비밀을 요구한 내용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에 해당한다.

3.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특약 설정

<부당한 특약 예시>

- (쿠팡) 영업점 위·수탁계약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③ 영업점 및 영업점 인력의 귀책사유로 고객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되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 주체를 비롯한 제3자와 CLS 사이에 민.형사 또는 행정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CLS를 면책시켜야 한다.
- (롯데) 상하차 도급계약 등 제18조(계약의 해제, 해지) ⑤ "수급인"이 계약종료 후 후속 업체 선정 때까지 업무 수행 또는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 만료, 종료 또는 해지 직전 3개월간 지급된 도급수수료의 산술평균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 (로젠) 운송위탁계약 제14조(사고차량 처리) 1. 파트너사의 차량운행 도중 발생하는 인명, 재산 기타 모든 사고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파트너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원사업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한 약정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택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계약 종료 후 계약이행 의무가 없는 수급사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면서 위약벌을 부과하며, 차량 사고 시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전가한 내용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특약에 해당한다.

4. 예측 불가능한 사항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설정

<부당한 특약 예시>

- (씨제이) 새벽배송서비스 상품운송위탁계약 제12조(사용인력 관리책임) ⑤ 협력사는 사용인력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최단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협력사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 (로젠) 운송위탁계약 및 터미널 도급계약 제18조(쟁의행위 등 단체행동) 1. 파트너사 및 파트너사의 고용인이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으로 화물 운송을 지연시키거나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파트너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전항의 단체행동으로 로젠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 파트너사는 로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전국적인 노조파업 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영업점 등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 발생 원인과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므로,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에 해당한다.

5. 표준계약서 등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의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정한 특약 설정

<부당한 특약 예시>

- (쿠팡) 영업점 위·수탁계약 제16조(계약의 해지) ③ (중략)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요 사항 부속합의서 제1조 제1항)
2. 영업점이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보호의무 또는 정보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영업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훼손·분실·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11. 영업점이 위탁업무에 관한교육을 미이행한 경우
- (씨제이) 영업점 위·수탁계약 제16조(계약의 해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당한 특약 예시>

- 5.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이 협의하여 중요사항이라고 정한 다음 각 목의 경우
 - 다. 절도, 횡령, 배임, 사기,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강요, 주거침입, 업무방해 기타 불법행위 또는 부속합의서 제16조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때. 이 경우 실운영자의 행위는 영업점의 행위로 본다.
 - 사. 영업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본 계약 이행에 장애 또는 지연이 발생하거나 택배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롯데) **상하차 도급계약 및 운송도급계약 제14조 또는 제15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중략)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6. 협력사 대내외적 위험으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 또는 대외적 신용도, 이미지 등을 실추하였거나 실추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 (한진) **영업점 위·수탁계약 제16조(계약의 해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이 협의하여 중요사항이라고 정한 다음 각 목의 경우
 - 2) 후방 감지기의 미장착, 관리의무 소홀, 후방 감지기 신호 미확인 및 무시 등

화물운송용역 협력계약 제21조(계약의 해지) 1. (중략)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 2) 제18조 소정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
- 3) "갑"이 지정한 "운송서비스 품질개선 기준" 이행하지 않을 시
- 10) 간선기사 APP 미사용

· (로젠) **영업점 위·수탁계약 등 제16조(계약의 해지) ③** (중략)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이 협의하여 중요사항이라고 정한 다음 각 목의 경우
 - 라. "영업점"이 "택배사업자"의 사전 허락없이 택배와 무관하게 "택배사업자"의 상호나 상표표시를 사용하였을 경우
 - 마. "영업점"이 운송장 등록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운송장 기재 내용 및 금액 등을 허위로 입력하여 고객에게 수령한 운임을 임의적으로 수정하여 착복하는 경우
 - 바. (중략) "택배사업자" 또는 "택배사업자"의 다른 영업점, 제3자(고객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택배사업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계약의 해지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거나 계약 위반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파산 등에 따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유지가 곤란할 때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계약 위반 정도와 횡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명 기회를 제공하거나 최고 절차를 두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계약해지의 사유를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한 특약에 해당한다.

6.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 설정

<부당한 특약 예시>

- (쿠팡) 영업점 위·수탁계약 제6조(수수료 지급) ⑨ 영업점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월 누락분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영업점의 과실 없이 청구하지 못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영업점이 전월 수수료 청구를 누락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택배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누락된 수수료 일체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므로,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한다.

7.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한 특약 설정

<부당한 특약 예시>

- (로젠) 서비스 설명서 제4조(손해배상) 9. 기타 본 계약 조문에 의한 의문 사항은 로젠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조건 내용이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6.24.선고 2021다220666판결 참조).

그러나, 해당 조항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택배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므로,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특약에 해당한다.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 폭염안전 5대 수칙,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씨제이대한통운(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주)한진, 로젠(주)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 합동점검 주요 내용 >

조사 및 점검 내용	부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상·하차장 국소냉방장치 설치·가동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사항 이행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시간 및 휴게시설 운영 상황 -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상태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대리점주 간 부당특약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등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또는 변경계약 미체결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

국토교통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 ①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② 고용·산재보험 가입, ③ 작업시간(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신욱균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나상명 (044-202-8893)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사무관	박현건 (044-202-8891)
		담당자	주무관	한진우 (044-202-8895)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온남이 (044-202-8902)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신산업하도급조사팀	책임자	팀 장	최정원 (044-201-4152)
		담당자	사무관	김준식 (044-201-4156)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신산업하도급조사팀	책임자	사무관	마철훈 (044-201-4153)
		담당자	팀장	김태종 (044-200-4593)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신산업하도급조사팀	책임자	사무관	권태균 (044-200-4596)
		담당자	사무관	권태균 (044-200-4596)

1. 일반현황

(단위: 억 원)

업체명	업종	설립일	2024. 12. 31. 기준	
			자산총액	매출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택배업 및 배달업 물류 관련 시설운영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2018. 5. 23.	18,290	38,349
씨제이대한통운(주)		1930. 11. 19.	77,338	83,662
롯데글로벌로지스(주)		1988. 6. 13.	25,358	32,609
(주)한진		1958. 3. 10.	31,029	24,374
로젠(주)		1999. 4. 30.	5,498	7,229

※ 자료출처 : 나이스평가정보 및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2. 관련 법령 및 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생략)
2. 천재지변, 매장유산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 5.(생략)

<부당 특약 고시>

I.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4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부당특약의 유형

1. ~ 3. (생략)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생략)

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생략)